

# 정책분석과 동향

초고령사회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 고덕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초고령사회 장사(葬事)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sup>1)</sup>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Funeral Services in a Super-Aged Society

고덕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한국의 장사(葬事)문화는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서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화장률 증가, 장사시설 부족, 장례 비용 부담, 친환경 장례에 대한 요구 확대 등 장사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에도 기존의 장사 정책과 제도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과 개인주의적 가치관 변화로 새로운 장례 방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기반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속 가능한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향을 모색하였다. 화장문화 중심으로 장사 정책을 재설계하고 화장 수요에 맞는 화장시설 및 자연장 활성화 방안, 장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재정립과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확충을 위한 정책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 1 들어가며

장사<sup>2)</sup>문화는 사망자와 유족은 물론 사망을 둘러싼 사회현상과 연관되어 있어 모든 국민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다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국민의 복지 실현을 중요 목표로 하고 있다. 한 개인의 죽음을 다루는 장사문화는 과거에는 사적인 영역에 속했지만, 현대에는 공적인 영역으로 전환되면서 국가나 사회에서 그 책임과 역할이 점차 커져 가고 있다(고덕기, 2015).

1) 이 글은 고덕기. (2024). 초고령화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국립외교원)을 요약, 발췌한 것이다.

2) ‘장사(葬事)’란 시신을 매장하거나 화장하는 등 시신을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친환경적인 장사문화, 장사 절차의 편리성, 장사 서비스의 경제성, 다양화 및 고급화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국민 의식에는 죽은 자에 대해 터부시하거나 기피하는 경향이 남아 있는 것 같다. 사망자에 대한 장사 방식의 존엄성과 품위를 제고하는 것은 그 국가관과 사회관 등을 바라보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초고령화 사회, 베이비붐세대의 노인세대 대거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고령층이 높아짐에 따라 사망자 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등 팬데믹 감염으로 인해 사망자가 추가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국민의 인식 변화 등으로 2024년 12월 말 기준 화장률은 94.0%(보건복지부, 2025)로 대부분 장사 방식이 화장 방식으로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5년도를 기점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넘어섰는데, 1990년대 중반까지는 화장률이 20% 수준에 머물렀으나 급속하게 화장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시설은 매우 미흡하거나 부족한 상태로 유족이 장례를 치르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전국 화장시설 62곳 중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은 7곳으로 화장 수급 불균형 현상은 심각한 수준이다(보건복지부, 2023). 화장 방식을 선택했으나 화장시설이 부족하여 제때 화장을 못 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여 화장하는 원정 화장 등으로 유족들은 시간적·경제적·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 장사제도는 그 시대의 사회적 가치관을 내포하고 있어 당대의 의식

이나 가치관 등의 영향을 받아 변화하기 마련이다. 과거에는 매장 중심의 장사문화 위주였으나 국토의 효율성, 보건 위생적 위해 방지, 편리주의 등의 인식 변화로 화장 중심으로 전환되었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961년 제정된 이후 38차례에 걸쳐 개정되었다. 전부 개정은 2000년, 2007년 두 차례 있었다. 현행 법률은 매장 중심의 묘지 관련 규정이 이 근간을 이루고 있다. 최초 법 제정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묘지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한 매장 및 묘지 설치 등의 규제적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매장 중심이 아니라 화장 중심으로 장사 방식의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화장 수요에 적절한 공급 및 화장 이후의 안치 방법 등 양질의 서비스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현행 장사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정적인 장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현행 제도와 관행의 격차를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고, 법의 실효성 확보 및 비합리적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 2 초고령사회 사망 및 장사문화 현황과 문제점

### 가. 고령 및 사망 현황

한국은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25년 1000만 명을 넘어서며 초고령사회<sup>3)</sup>로 진입하였다. 203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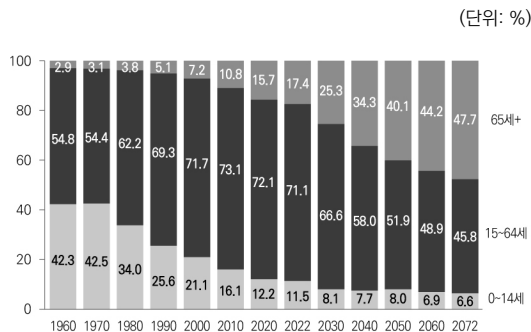
3)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14% 이상이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로 분류하고 있다(World Bank Group, 2019).

25.3%, 2050년 40.1%, 2072년 47.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총인구의 약 절반 이상이 노인 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인 중에서 85세 이상 인구는 2022년 92만 명에서 2024년 100만 명, 2072년 517만 명으로 2022년 대비 5.6배 수준으로 증가하며 85세 이상 인구 비율도 2022년 1.8%에서 2072년 14.3% 수준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그림 1, 2). 전체 인구 중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사회적·경제적으로 중요한 사항이지만, 노인 중 8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매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85세 이상의 고령층

이 많을수록 사망률 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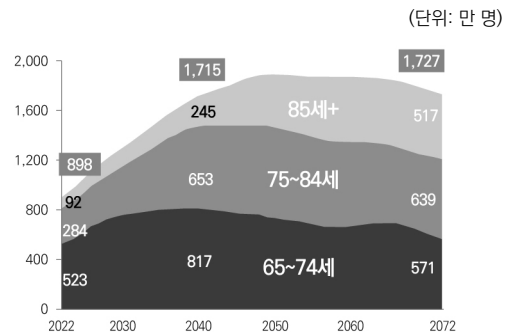
2025년 사망자 수는 잠정 36만 3400명으로 조(粗)사망률(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 7.1명이다. 2015년 사망자 수는 27만 5900명이었는데, 10년이 지난 2025년에는 36만 3400명으로 8만 7500명이 증가하였다. 이는 약 1.3배가 증가한 것이다. 조사망률은 2015년 5.4%에서 2020년 5.9%, 2022년 7.3%로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 6.9%로 약간 낮아졌다가 2025년에는 다시 7.1%로 증가하였다(표 1). 2022년 조사망률이 특히 높아진 이유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가 증가한 것으로 판

[그림 1] 고령 비율(1960~2072년)



출처: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통계청, 2021.

[그림 2] 고령인구 연령 구조(2022~2072년)



[표 1] 사망자 수 및 조사망률(2015~2025p)

(단위: 천 명, %, 인구 1천 명당 명)

| 구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  | 2025p |
|-------|-------|-------|-------|-------|-------|-------|-------|-------|-------|-------|-------|
| 사망자 수 | 275.9 | 280.8 | 285.5 | 298.8 | 295.1 | 304.9 | 317.7 | 372.9 | 352.5 | 358.6 | 363.4 |
| 조사망률  | 5.4   | 5.5   | 5.6   | 5.8   | 5.7   | 5.9   | 6.2   | 7.3   | 6.9   | 7.0   | 7.1   |

출처: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국가데이터처, 2026.

단된다.

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나. 화장률 및 매장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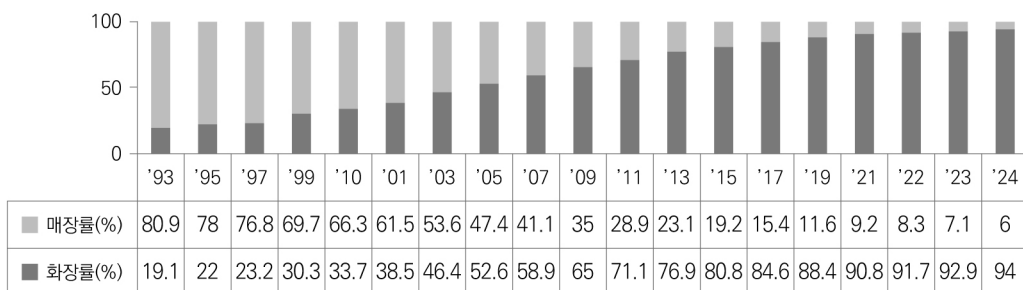
한국은 전통적으로 유교적인 영향으로 매장 중심의 장사 방식으로 행하여 왔다. 1993년 화장률<sup>4)</sup>은 19.1%, 매장률<sup>5)</sup>은 80.9%였다. 교통사고, 불의의 사고 등으로 사망하면 극히 일부분만 화장하였다. 그러나 매장으로 인한 묘지의 증가로 국토의 잠식 등의 비효율적, 묘지 구입에 따른 경제적 비용 증가, 보건위생상의 문제 등으로 점차 화장률이 증가하였다. 2005년을 기점으로 화장률이 매장률을 앞서는 역전 현상이 일어났다. 화장률 52.6%, 매장률 47.4%로 장사문화의 대전환기를 맞이하였다. 그 이후 꾸준히 화장률이 증가하면서 2024년 화장률 94.0%로 국민 대부분이 화장 방식을 선택

## 다. 장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

### 1) 화장문화 중심의 화장 정책 및 제도의 준비 대응 미흡

현행 장사 정책 및 제도는 오랜 기간 형성된 효 사상과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매장 중심의 묘지 관련 정책과 제도가 많은 부분 차지하고 있다. 1962년 「매장 등 묘지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하면서 지금까지 이러한 정책 및 제도가 이어져 왔다. 현재는 매장 중심이 아니라 화장 중심의 문화가 보편화되고 정착되어 있다. 따라서 화장문화 중심의 정책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한 화장 관련 정책 및 제도상의 준비와 대응은 미흡한 실정이

[그림 3] 화장률 및 매장률 추이



출처: "장사업무 안내", 보건복지부, 2007~2024.

4) 화장률은 해당 연도 사망자 중 화장시설에서 화장하는 비율을 말한다.

5) 매장률은 해당 연도 사망자 중 화장하지 않고 묘지에 매장하는 비율을 말한다.

다. 2005년도를 시점으로 화장 방식이 매장 방식을 넘어섰고 점차 화장 방식을 선택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세부적인 정책 및 제도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다. 화장 수요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원활히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효율적, 합리적, 탄력적으로 정책 및 제도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화장시설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주민에게 다른 지역 주민보다 우선 화장할 수 있는 화장 예약, 화장 비용 차등 등의 시책을 펴고 있다. 화장시설이 없는 지역에서는 화장시설이 있는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여 화장할 수밖에 없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 2) 장사 행정의 비효율성 및 제도와 현실의 격차

장사 관련 법령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규제적인 성격이 강하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사전·사후에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도와와의 괴리가 심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하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 등을 설치할 때는 설치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이러한 행정행위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

다. 결국 개인 묘지나 가족 묘지는 대부분 불법적인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또한 한시적 매장제도 도입 이후 최초 30년, 1회 연장하여 최대 60년까지 매장이 가능한데, 그 이후에는 개장(改葬)해야 한다. 하지만 묘지 설치 신고나 허가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실효성이 없는 규정이다. 묘지 등 장사시설은 중앙정부 소관 법령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장사시설을 설치할 때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설치 장소인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역의 지리적·지역적 여건·특성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 관련 권한이나 위임 사항이 매우 제한적이다.

## 3) 장사시설 노후화로 혐오 및 기피 시설 인식 여전

장사시설은 고인의 존엄성과 품격이 있어야 하는 시설이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화장시설 등 장사 시설들은 노후화로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장사 시설은 대부분 일상생활의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 활용도 및 편리성 등에서 낮아질 수밖에 없다. 평생 살아가면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의 장사를 치를 수 있는데, 장사시설에 대한 투자나 관심이 부족한 상태여서 장사시설이 혐오, 기피 시설로 인식되어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최근 평택시, 양주시, 진천군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설 화장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반발로 사업이 중단·지연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고인에 대한 거부감, 기피하는 현상이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죽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그 시대 사회의 가치관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우리 가족, 부모 등이 모여져 있거나 모실 수 있는 장사시설을 혐오, 기피 시설로 인식하면 그것은 결국 자신에게 되돌아온다.

#### 4) 시대적 욕구 및 변화에 맞는 장사문화 대응 미흡

코로나19로 장사문화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증가하면서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 안치실이 부족하여 유족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였다. 또한 비대면으로 장례식장 문상이 제한되어 가족이나 가까운 친인척 등과 함께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는 경향이 높아졌다. 코로나19 등 팬데믹의 영향으로 장사문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시신의 보건위생적인 처리 및 보관, 비대면 문상 등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준비가 미흡한 상태이다. 코로나19에 감염된 시신의 경우 처리 및 보관 방법 등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어야 하고, 문상이 제한되는 경우 비대면 따른 적절한 장사문화의 대응이 필요하다. 인공지능(AI) 기술 등을 장사문화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장사문화 및 서비스 분야는 특히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 소비자, 즉 유족들이 매우 불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도 장사 분야는 서비스에 맞는 적절한 비용 지불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장례식장의 비용, 상조회, 민간 장사시설 사용료 등 적정 비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적절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장사 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

#### 가. 정책적 개선 방향

첫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모든 장사 업무를 중앙에서 총괄하여 장사 관련 법령 및 제도를 입안·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적용·시행한다. 이제 중앙에서는 기본 정책 및 제도의 방향·방침만 정하고,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야 한다. 장사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규정들은 지역 여건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화장문화 정착을 위하여 화장시설을 확충하여야 하며, 화장 후 유골을 처리하는 봉안시설, 자연장지 설치·조성을 위한 관련 규제 개선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셋째, 장사시설 관리, 비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다양한 욕구 및 선택의 폭을 확대하여야 한다. 국가와 공인된 공공기관에서 장사시설 평가 등을 통해 결과를 공개하는 장사시설 인증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 장사시설 인증 제도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확보하고 장사시설 간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장사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

키는 기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넷째, 장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인식 대전환이 필요하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있어서 장사문화 및 장사시설이 가깝고 친근감 있게 인식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장사문화 및 장사시설이 소중하고 필요한 시설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에서 죽음과 장사시설에 대한 국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사시설의 고급화, 현대화가 필요하다. 기존 장사시설은 리모델링·재건축 등이 추진되어야 하며, 향후 설치될 시설은 친환경적인 시설로 건립되어야 한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국비 및 지방비의 시설 투자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초고령사회 진입, 코로나19 팬데믹 경험, 정보통신기술(ICT)의 발전 등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하여 장사 관련 시설·산업·서비스의 적절한 공급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나. 제도적 개선방안

매장 및 묘지 관련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개인 묘지 설치 신고 제도를 사후 신고제에서 사전 허가제로 변경하는 것이다. 개인은 모든 묘지 설치 제한 지역을 알 수 없고 확인하기도 어렵다. 설치 전에 해당 지역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게 하면 불법

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한시적 분묘 설치 기간에 대한 규제 강화 제도개선이다. 분묘 최초 설치 기간을 최대 60년에서 30년으로 단축하고 1회 연장을 삭제하는 것이다. 실질적으로는 기존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 배우자를 합장한 경우에는 다시 처음부터 설치 기간을 계산하기 때문에 최대 40년 또는 50년 이상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묘 설치 기간 단축을 통해 분묘 관리에 대한 유족의 부담 경감과 친환경, 국토의 효율성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개인 및 가족 묘지 설치 거리의 규제 강화 내용이다. 묘지를 일정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종종·문중 묘지나 법인 묘지보다 개인·가족 묘지는 더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가족 묘지가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는 묘지 설치 거리 제한 규정을 약화할 뿐만 아니라 개인·가족 묘지를 촉진하는 오해를 낳을 수도 있다. 개인·가족 묘지 거리 제한을 종종·문중 묘지 등과 동등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넷째, 묘지 면적 및 시설물 설치 관련 제도개선이다. 개인·가족 묘지, 종종·문중 묘지의 면적과 봉안묘 1당 면적을 축소하는 한편 분묘 및 봉안묘의 비석 높이 및 면적도 축소하여야 한다. 또한 분묘 및 봉안묘 등에 설치하는 비석과 상석 이외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개선안은 묘지 억제 정책 및 지속 가능한 자연환경 보전 등 국가의 장사 정책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화장문화 정착을 위한 화장 관련 제도 개선 사항이다. 첫째, 화장시설의 설치를 촉진·확충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장례식장이 아닌 독립된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전문 장례식장 내에 소규모 화장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지역에 화장시설이 없는 곳에 전문 장례식장 내에 화장로 시설을 설치하면 화장시설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대규모 화장시설 설치로 인한 시간적·행정적·재정적인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국가(시·도) 보존묘지(분묘) 지정의 규제 개선 내용이다. 화장문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 매장을 통한 분묘나 묘지에만 국한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시·도)에서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거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한 인물에 대해서만 보존 대상으로 지정하는 것보다는 확장하여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분묘나 묘지뿐만 아니라 봉안시설, 자연장지도 보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 봉안 및 자연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사시설의 인증 및 전문인력 강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이다. 첫째, 장사시설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장사시설의 특성상 시설 수준에 대한 정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 장례지도사 또는 장례 관련 업체 등에 의존하여 장사시설을 결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장사시설 우수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국가 또는 공인기관에서 장사시설의 위치, 사용 비용, 시설관리 등

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장사시설 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이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장사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시·도지사는 일정 기준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일정 교육 시간을 이수하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정 교육 시간 이수 여부보다는 전문 역량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무시험 교육 이수형에서 교육 이수 후 검정 시험형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또한 시신의 위생적 처리인 약품처리 자격 제도를 도입하여 국제화 시대에 적합한 장사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이는 장사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장사서비스에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장사문화 및 장사시설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장사 업무 종사자 등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하여 가칭 ‘장사(葬事)의 날’을 기념일로 지정하고 주간 행사를 개최하면서 장사문화 및 시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 친밀한 복지 분야로 인식되도록 하는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시설 설치 촉진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비율과 장사시설 지원 단가를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국고보조금은 전국 지역에 동등하게 적용하기보다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재정자립도 등 재정 상태를 고려한 차등 지원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사시설 지원 단가는 시설의 친환경화, 고급화 및 현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현행 기준 단가보

다 50%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한 정책이나 제도개선 안을 통하여 전반적인 장사문화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국민 삶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이다. 죽음은 우리 생활에 당연한 현상이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등이 언젠가는 죽음은 맞이하고 장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장사는 우리의 생활의 일부분으로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장사 정책과 제도는 국민의 삶에 안정감을 제공하고, 고인과 유족을 연결하는 상징적인 매개체로서 사회공동체 유지와 통합에 큰 영향을 준다. 이 글에서 제시한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이 국민적 신뢰와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토론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㉞

통계청. (2021). **장래인구추계: 2020~2070년**.

World Bank Group. (2019). *World Bank Support to Aging Countries*.

## 참고문헌

고덕기. (20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총론**. 대학서림.

고덕기. (2024). **초고령사회 장사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 국립외교원.

국가데이터처. (2026). **2025년 인구동향조사: 출생·사망통계(잠정)**.

보건복지부. (2007~2024). **장사업무안내**.

보건복지부. (2023). **2023~2027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

보건복지부. (2025). **보건복지통계연보**.

# Policy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Funeral Services in a Super-Aged Society

Go, Deok Gi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s funerary sector faces various challenges arising from rapid social change. The funeral landscape has changed markedly. Cremation has become increasingly prevalent, while cremation facilities remain in short supply. The cost of funerals is becoming an ever-greater burden. Demand for environmentally sustainable forms of burial is rising. However, the existing framework of funerary policies and regulations has not kept pace with these developments. This article examines these issues comprehensively and explores directions for sustainable funerary policy. The recommendations include reconfiguring funerary policy around the now predominant practice of cremation, expanding cremation facilities in keeping with demand, and promoting natural burial. The article also proposes institutional reform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funerary administration, including a reorganization of the respective responsibilities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olicies for the modernization and expansion of funerary facilities.